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17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서명옥 · 김미애 · 고동진
이현승 · 박정하 · 배준영
주호영 · 김 건 · 서일준
조은희 · 임이자 · 박성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에 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의3.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1군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5.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을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을”로, “마약”을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임시마약류”를 “2군 임시마약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12. (생 략) <u><신 설></u>	제59조(벌칙) ① -----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제5조제1항 · 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 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u>
<u><신 설></u>	<u>12의3. 제5조제1항 · 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1군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u>
13. · 14. (생 략) <u><신 설></u>	13. · 14. (현행과 같음) <u>15.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 · 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6. (생략)

②·③ (생략)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 10의5. (생략)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

제60조(벌칙)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을-----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2군 임시마약류-----

8. ~ 10의5. (현행과 같음)

11. -----
-----제2조

<u>신성의약품</u> 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생 략) ② · ③ (생 략)	<u>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 성의약품</u>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